

2003. 2. 10

가5회 5차 본회의 ①
심사 부의서 (본부)

條例案審查報告書

○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제작일자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의내용
충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	2003.1.29	1. 29	2. 8	2. 8	기획감사 과

2. 제안설명요지

1) 제안이유

- 시·군 상하수도 관련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순증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공무원 정원조정(증 11)
-총 정원 1,143명 ⇒ 1,154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2. 3. 18일 조례 제568호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,138명에서 1,143명으로 개정하였으나

- 그 이후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급수 인구가 5개면에 3,603가구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상수원보호관리지역도 1,645km²가 더 확대되어 민원처리 및 보호구역 순찰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
- 하수처리장 시설은 2002년 12월에 약품투입실 1동, 침전지 2지, 펌프장 6개소, 차집관거 11.26km 등이 증설되었고 1일 처리용량도 64,000톤에서 89,000톤으로 25,000톤이 늘어나는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를 수행할 공무원 소요 인력을 2002년 9월 18일 도에 승인 요청한바, 지난 2002. 12. 24일 충청북도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3명, 수질환경사업소에 시설담당 등 8명 합계 11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.답변 요지

▶ 질의 : 상하수도 시설관련 늘어나는 기능적 선발 방법은?

○답변 : 일반직은 공채 채용, 기능직은 총무과 공고후 시험과정 거쳐 충원 계획임.

▶ 질의 : 수질환경사업소 8명 증원은 과다증원 아닌가?

○답변 : 하수처리용량의 25,000톤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증원 불가피

▶ 질의 : 공무원 정원 총수 결정 방법은?

○답변 : 인구수 등 감안 정원 결정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끝임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